



제9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의안번호 제4192호

2024. 8. 27.

교육안전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I. 심사경과

- 의안번호 : 제4192호
- 발 의 자 : 김영현 의원 외 9명
- 발의일자 : 2024년 8월 16일
- 회부일자 : 2024년 8월 19일
- 상정일자 : 2024년 8월 27일
- 의결일자 : 2024년 8월 27일
 - 제9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안전위원회
- 의결결과 : 원안가결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 세종특별자치시 내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일본제국주의를 연상시키는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조 및 안 제2조)
- 나. 교육감의 책무와 적용대상 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및 안 제4조)
- 다.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 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 자문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안 제9조)

- 마. 일제상징물의 사용을 지양하는 교육 분위기 조성 및 적용 대상 기관 등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교육기본법」 등 (붙임 2)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3)

Ⅲ. 검토의견

1. 제정목적

-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의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을 제한하고, 관련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과 민족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여,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2조) 용어 정의
 - 조례에서 사용하는 “일본제국주의 상징물”, “디자인”, “학교”의 뜻을 규정함
- (안 제3조) 교육감의 책무
 -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상에서 일제상징물이 사용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교육감의 책무를 명시함
- (안 제4조) 적용대상 기관
 - 조례 적용 대상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기관뿐만 아니라 위탁 사무를 수행하거나 사업 및 행사에 참여하는 단체까지로 확대함
- (안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 다른 조례와의 중복 적용 시 적용의 예외사항과 우선순위를 규정함

○ (안 제6조) 실태조사

- 조례 적용 기관을 대상으로 일제상징물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명시함

○ (안 제7조~제9조) 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 일제상징물 사용 제한 자문위원회의 역할을 규정하고, 위원의 위촉 대상과 임기를 명시하였으며, 개의 조건 및 의결 방법, 업무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 (안 제10조) 교육 분위기 조성

- 일제상징물의 사용을 지양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의 사례를 제시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 사항을 명확히 함

○ (안 제11조) 교육

- 교육감은 조례 적용 대상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일제상징물 사용 제한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을 명시함

3. 검토의견

- 언론보도를 통해 익히 알려졌듯이, 지난해 삼일절, 세종시 아파트 어느 곳에서 일장기가 내걸리며 국민의 공분을 샀던 일이 있었고 올해 현충일에는 부산에서 육일기를 게양하는 일이 발생하였음
- 또한, 일부 청소년들이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 디자인된 옷이나 기념품 등을 무의식적으로 구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앞으로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을 위해 사회적 관심과 접근이 필요한 상황임
- 일제 강점기에 시행된 수많은 침탈과 범죄행위에 대해 일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적절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국민적 정서가 팽배한 상황에서, 일본 제국주의를 연상케 하는 상징물의 사용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 사회적 상식을 훼손하고 공동체의 분열을 유도할 수 있어 우려스러움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세종시교육청과 직속기관, 학교에서 일본 제국 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는 그 밖의 상징물 등의 사용 제한을 통해 일제강점기를 비롯한 근현대사의 올바른 역사의식을 함양하고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음
- 더불어 학생들을 보다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조례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조례안 제6조 실태조사에 따라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확인하였을 경우, 향후 이 상징물을 어떻게 청산할지에 대한 고민과 함께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의식 정립을 위한 새로운 교육 방법의 연구와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타 시도 유사 조례 제정 현황>

지역	조례명	제정일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2020. 9. 24.
경기	경기도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 조례	2021. 1. 4.
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2024. 7. 15.

IV. 토 론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VII. 소수의견 : 없음

VIII. 기타사항 : 없음

【참고자료】

붙임 1. 조례안

붙임 2. 관계법령

붙임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문 의 처
044)300-7510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제 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내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일본제국주의를 연상시키는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이하 “일제상징물”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일본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

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디자인

2. “디자인”이란 시설 및 조형물과 제품, 시각이미지 등에 대한 도안 및 형태 등을 말한다.

3. “학교”란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은 제4조에 따른 기관 및 단체에서 일제상징물이 사용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기관 등)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적용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및 세종특별자치시 내 학교(이하 “기관”이라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단체

3.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주관하는 사업·행사 등에 참여하는 단체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제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해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기관을 대상으로 일제상징물의 사용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일제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시책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일제상징물 사용 제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1. 일제상징물의 사용 제한 시책의 수립

2. 일제상징물에 대한 판단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무원
2. 일제강점기 관련 역사교육 전문가 및 연구 기관 또는 단체 임직원
3. 일제상징물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디자인 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0조(교육 분위기 조성 등) ①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기관에서 일제상징물의 사용을 지양하는 교육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분위기의 조성을 위해 행사 및 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고, 세종특별자치시, 시민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교육) 교육감은 일제상징물의 사용 제한을 위해 제4조에 따른 기관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3. 24., 2012. 3. 21.>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4. 삭제 <2012. 3. 21.>
5. 삭제 <2012. 3. 21.>
6. “방과후 과정”이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개정 2019. 12. 3.>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전문개정 2012. 3. 21.]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제6조(실태조사),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교육 분위기 조성 등), 제11조(교육)에 따라 비용 발생 예상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의원 김 영 현